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정보 제공〉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4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미활용 군용지</u> ”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u><신설></u>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u>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u> 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u>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 현행법(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가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며,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²⁾하고 있음.
- 그런데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등 여러 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의 내용을 일반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활용 군용지 현황]

(‘26. 2. 기준 / 단위: 필지, 만㎡)

지역구분	현황		지역구분	현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서울특별시	56	21.9	충청북도	99	55.6
부산광역시	2	0.7	충청남도	113	13.1
대구광역시	13	2.6	전라남도	50	30.8
인천광역시	63	5.9	경상북도	69	42.4
광주광역시	5	0.6	경상남도	35	8.1
대전광역시	23	3.2	강원특별자치도	564	179.4
울산광역시	6	0.3	전북특별자치도	27	5.3
세종특별자치시	12	0.6	제주특별자치도	3	1.3
경기도	1,336	414.5	계	2,476	786.3

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생략)

5.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6.~8.(생략)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여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미활용 군용지 현황에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군사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활용 군용지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 제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하여, 군사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